의안 번호	344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운 영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344 호
제 출 자	정기혁 외원 21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한상규

1.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63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섭단체의 정의 및 기능(안 제2조~제3조)

나.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·변경 등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5조)

다. 예산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1)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의회사무국

라. 입법예고 : 2024. 10. 10. ~ 2024. 10. 16.

4.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 (개정 2023. 3. 21. 시행 2023. 9. 22)됨에 따라 기존에 존치하던

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되었음.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안 제3조는 교섭단체의 기능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 및 조정,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,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 등을 명시하고

안 제4조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으로 3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규정하고, 각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두도록 하였으며

안 제6조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두었음. 지금까지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경우 상위법령이 없어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비를 추가적 으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,

교섭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로 행정안전부훈령인 “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”을 살펴보면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, 예산 편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.

○ 이와같이 “교섭단체”는 의회가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이나 중요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정치적 이념이나 목표가 동일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회 운영에 있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정당 간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,

○ 우리 구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교섭단체를 공식화하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3월 9일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을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나

○ 규칙 제정 당시에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한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이 없고 교섭단체의 성격상 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「지방자치법」 제52조에 따라 의회규칙 으로 제정하였으나 「지방자치법」 에 교섭단체에 관한 명시적 근거 및 위임 조항이 마련된 만큼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---

1) **제63조의2(교섭단체)**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2) **제52조(의회규칙)**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